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DIRECTIVE 2002/46/EC - 식품보충제 지침
- 제정 고시일 : 2002.7.12.
- 국문번역 통합본 : M7 - 2017.7.26.
- 최종개정 통합본 : M9 - 2022.9.30.
(최종 방문일: 2023년 12월 29일)
- 출처 : 유럽연합 공식관보(EUR-Lex)

식품보충제 관련 회원국 법령의 균일화에 관한 2002년 6월 1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2002/46/EC호
(유럽경제지역 관련지침)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June 2002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food supplements
(Text with EEA relevance)

제1조

1. 본 지침은 식품으로 표시 및 판매되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러한 제품은 미리 포장된 상태(pre-packaged form)로만 최종소비자(ultimate consumer)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본 지침은 “인체용 의약품 관련 유럽공동체규격에 관한 2001년 11월 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2001/83/EC호(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에 정의된 의약품(medicinal products)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¹⁾.

제2조

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 (a)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란 일반적인 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것으로서, 영양소 또는 영양적 효과나 생리적 효과를 갖는 여타의 물질이 단독으로 또는 결합된 형태로 농축되어 있으며 캡슐제, 응고형제, 정제, 환제 및 여타의 제형과 같이 용량이 지정된 제형(dose form), 분말이 담긴 봉지(sachet), 앰플(ample)형태의 액체,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는 용기(drop dispensing bottle), 미세한 단위로 측정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여타의 액제 및 입제 성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의미한다.
- (b) “영양소(nutrients)”란 아래의 물질을 의미한다:

- (i) 비타민,
- (ii) 미네랄.

제3조

회원국은 식품보충제가 본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된 규칙(rules)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유럽공동체(Community) 내에서 판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1. **부속서 I**에 열거된 비타민과 미네랄로서 **부속서 II**에 열거된 성상을 갖춘 물질만이 식품보충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단, 본 조의 6항을 조건으로 한다.
2.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의 본 지침에 대한 순도기준(purity criteria)은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기준이 본 조의 3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 지침의 핵심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본 지침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measure)는 제 13조 (3)항에 언급된 심사를 통한 규제수립절차(regulatory procedure)에 의거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3.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의 순도기준은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할 때 해당물질의 사용에 관한 유럽공동체 법률(Community legislation)에 명시된 순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 중에서 그 순도기준이 유럽공동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순도기준(generally acceptable purity criteria)을 적용하여야 하며 더욱 엄격한 순도기준이 명시된 국내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5. 본 지침의 핵심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 1항에 언급된 목록에 대한 변경(modification)은 제13조 (3)항에 언급된 심사를 통한 규제수립절차에 의거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본 조 1항에 언급된 목록에서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13조(4)항에 명시된 긴급절차(urgency procedure)를 개시할 수 있다.
6. 상기 1항의 개폐(derogation)를 통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은 자

국 내에서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부속서 II**에 열거되지 아니한 성상의 비타민과 미네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단:

- (a) 해당물질은 본 지침의 발효일 현재 유럽공동체에서 판매 중인 1종 이상의 식품보충제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 (b) 2005년 7월 12일 이전까지 회원국에 의하여 집행위원회로 제출된 해당물질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그러한 물질을 또는 그러한 성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을 식품보충제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불리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상기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속서 I**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부속서 II**에 열거되지 아니한 성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보충제의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자국의 기존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8. 늦어도 2007년 7월 12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집행위원회를 위한 본 지침의 개정안(proposal for amendment)과 더불어 본 조 1항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양소 또는 영양적 효과나 생리적 효과를 갖는 물질의 범주에 관한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등이 포함된 특정규칙 제정 권고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1. 제조자가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당 식품보충제 중 비타민 및 미네랄 최고 함량(maximum amount)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a) 적절한 경우, 다양한 소비자집단의 상이한 민감도(degrees of sensitivity)를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학적 데이터(generally accepted scientific data)에 근거한 과학적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에 의하여 설정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대안전수준(upper safe level);
 - (b) 여타의 식이공급원(dietary sources)으로부터 섭취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2. 상기 1항에 언급된 최대수준을 설정할 때, 인구의 비타민 및 미네랄 섭취 기준(reference intake)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제조자가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당 식품보충제 중 비타민 및 미네랄 최저 함량(minimum amount)은 식품보충제가 상당한 양(significant amount)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4. 상기 1, 2 및 3항에 언급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고 및 최저함량은 집행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본 지침의 핵심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본 지침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는 제13조 (3)항에 언급된 심사를 통한 규제수립절차에 의거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제6조

1. 지침 제2000/13/EC호의 제5조(1)항에 따라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시판 시 명칭은 “식품보충제”로 하여야 한다.
2. 라벨링, 표시 및 광고는 식품보충제가 사람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거나 그러한 특성이 있음을 암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침 제2000/13/EC호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라벨링은 아래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a) 제품의 특성을 결정짓는 영양소나 물질 범주의 명칭(name of the categories), 또는 그러한 영양소나 물질의 성격에 관한 표시(indication of the nature);
 - (b) 제품의 하루 권장섭취량;
 - (c) 명시된 하루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경고;
 - (d) 식품보충제가 고른 식단을 대신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
 - (e) 제품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문구.

제7조

식품보충제의 라벨링, 표시 및 광고는 균형 잡히고 고른 식단(balanced and varied diet)을 섭취하더라도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 조의 시행을 위한 규칙은 제13조(2)항에 언급된 절차에 의거하여 채택될 수 있다.

제8조

1. 영양적 효과나 생리적 효과를 갖는 제품 중 영양소 또는 물질 함량은 숫

자(numerical form)로 라벨링 되어야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표시를 위한 단위는 **부속서 I**에 명시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항의 시행을 위한 규칙은 제13조(2)항에 언급된 절차에 의거하여 채택될 수 있다.

2. 표시대상 영양소 또는 여타 물질의 함량은 라벨에 표시된 하루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비타민과 미네랄에 관한 정보는 지침 제90/496/EEC호의 부속서에 명시된 섭취참고량(reference value)에 대한 백분율(percentage)로도 표시될 수 있다.

제9조

1. 제8조(1)항 및 (2)항에 따라 표시되는 값은 제조자의 제품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균값으로 하여야 한다.

라벨에 표시된 값(declared value)과 공식적인 점검(official check)과정에서도 출된 값 사이의 차이에 관한 규칙 등 본 항의 시행을 위한 추가규칙은 제13조(2)항에 언급된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제8조(3)항에 명시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참고량에 대한 백분율은 도표형식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

본 항의 시행을 위한 추가규칙은 제13조(2)항에 언급된 절차에 의거하여 채택될 수 있다.

제10조

식품보충제에 대한 모니터링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조자 또는 제품을 시판하는 자로 하여금 제품에 사용된 라벨의 견본을 관할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제품의 출시를 그러한 당국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1. 제4조(7)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은 조성, 제조사양, 표시 또는 라벨링과 관련된 사유로 본 지침 및 (적절한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유럽공동체 법률)을 준수하는 한 제1조에 명시된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럽공동체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의 제28조와 30조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1항은 본 지침에 따라 제정된 유럽공동체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내법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1.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본 지침 또는 유럽공동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가용하게 된 정보를 재평가한 결과, 회원국이 제1조에 명시된 제품이 전술한 지침이나 법률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그러한 조항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일시적 중단이나 제한결정 및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여타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하게 관련 회원국이 제시한 근거를 검토하고, 식품공급사슬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를 통하여 회원국들과 협의하며, 그러한 협의가 완료된 즉시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에 명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지침 또는 본 지침의 이행조치는 집행위원회에 의해서만 조정(adaptations)은 집행위원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지침의 핵심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본 지침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는 제13조 (3)항에 언급된 심사를 통한 규제수립절차에 의거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전술한 조정을 위하여 제13조(4)항에 명시된 긴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단행한 회원국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그러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제13조

1.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78/2002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식품공급사슬동물보건상임위원회⁽²⁾의 보좌를 받아야 한다.
2. 본 항이 인용될 경우, 결정1999/468/EC의 제8조를 고려하여 동 결정의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결정1999/468/EC의 제5조 (6)항에 명시된 기간은 3개월로 하여야 한다.
3. 본 항이 인용될 경우, 결정1999/468/EC의 제8조를 고려하여 동 결정의 제

5a조 (1)~(4)항 및 제7조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본 항이 인용될 경우, 결정1999/468/EC의 제8조를 고려하여 동 결정의 제 5a조 (1), (2), (4) 및(6)항 및 제7조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유럽식품안전청과 협의 하에 채택 되어야 한다.

제15조

회원국은 2003년 7월 31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집행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술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은:

- (a) 늦어도 2003년 8월 1일부터는 본 지침을 준수하는 제품의 거래가 허용되고;
- (b) 늦어도 2005년 8월 1일부터는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거래가 금지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에 본 지침을 인용하거나 관보에 게재된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에 본 지침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인용방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16조

본 지침은 유럽공동체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본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 I

식품보충제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1. 비타민

- 비타민 A (Vitamin A; $\mu\text{g RE}$)
- 비타민 D (Vitamin D; μg)
- 비타민 E (Vitamin E; mg a-TE)
- 비타민 K (Vitamin K; μg)
- 비타민 B1 (Vitamin B1; mg)
- 비타민 B2 (Vitamin B2; mg)
- 나이아신 (Niacin; mg NE)
- 판토텐산 (Pantothenic acid; mg)
- 비타민 B6 (Vitamin B6; mg)
- 폴산 (Folic acid; μg) (³)
- 비타민 B12 (Vitamin B12; μg)
- 비오틴 (Biotin; μg)
- 비타민 C (Vitamin C; mg)

2. 미네랄

- 칼슘 (Calcium; mg)
- 마그네슘 (Magnesium; mg)
- 철 (Iron; mg)
- 구리 (Copper; μg)
- 아이오딘 (Iodine; μg)
- 아연 (Zinc; mg)
- 망가니즈 (Manganese; mg)
- 소듐 (Sodium; mg)
- 포타슘 (Potassium; mg)
- 셀레늄 (Selenium; μg)
- 크로뮴 (Chromium; μg)
- 몰리브덴 (Molybdenum; μg)
- 불소 (Fluoride; mg)
- 클로라이드 (Chloride; mg)
- 인 (Phosphorus; mg)
- 붕소 (Boron; mg)
- 규소 (Silicon; mg)

부속서 II

식품보충제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비타민물질과 미네랄물질

A. 비타민

1. 비타민 A (VITAMIN A)
 - (a) 레티놀 (retinol)
 - (b) 레티닐아세테이트 (retinyl acetate)
 - (c) 레티닐팔미테이트 (retinyl palmitate)
 - (d) 베타-카로틴 (beta-carotene)
2. 비타민 D (VITAMIN D)
 - (a) 콜레칼시페롤 (cholecalciferol)
 - (b) 에르고칼시페롤 (ergocalciferol)
3. 비타민 E (VITAMIN E)
 - (a) D-알파-토코페롤 (D-alpha-tocopherol)
 - (b) DL-알파-토코페롤 (DL-alpha-tocopherol)
 - (c) D-알파-토코페릴아세테이트 (D-alpha-tocopheryl acetate)
 - (d) DL-알파-토코페릴아세테이트 (DL-alpha-tocopheryl acetate)
 - (e) D-알파-토코페릴산숙신산 (D-alpha-tocopheryl acid succinate)
 - (f) 혼합토코페롤 (mixed tocopherols) ⁽⁴⁾
 - (g) 토코트리에놀토코페롤 (tocotrienol tocopherol) ⁽⁵⁾
4. 비타민 K (VITAMIN K)
 - (a) 필로퀴논 (phylloquinone) (피토메나디온, phytomenadione)
 - (b) 메나퀴논 (menaquinone) ⁽⁶⁾
5. 비타민 B1 (VITAMIN B1)
 - (a) 염산염티아민 (thiamin hydrochloride)
 - (b) 일질산티아민 (thiamin mononitrate)
 - (c) 일인산티아민 (thiamine monophosphate chloride)
 - (d) 피로인산염티아민 (thiamine pyrophosphate chloride)
6. 비타민 B2 (VITAMIN B2)
 - (a) 리보플라빈 (riboflavin)
 - (b) 5'-인산염리보플라빈 (riboflavin 5'-phosphate, sodium)
7. 나이아신 (NIACIN)
 - (a) 니코틴산 (nicotinic acid)

- (b) 니코틴아미드 (nicotinamide)
 - (c) 이노시톨헥사니코티네이트 (inositol hexanicotinate, inositol hexaniacinate)
8. 판토텐산(PANTOTHENIC ACID)
- (a) D-판토텐산칼슘 (D-pantothenate, calcium)
 - (b) D-판토텐산소듐 (D-pantothenate, sodium)
 - (c) 텍스판테놀 (dexpantenol)
 - (d) 판테테인 (pantethine)
9. 비타민 B6 (VITAMIN B6)
- (a) 피리독신염산염 (pyridoxine hydrochloride)
 - (b) 피리독신5'-인산 (pyridoxine 5'-phosphate)
 - (c) 피리독살5'-인산 (pyridoxal 5'-phosphate)
10. 폴산(FOLATE)
- (a) 엽산 (pteroylmonoglutamic acid)
 - (b) 칼슘-L-메틸폴산 (calcium-L-methylfolate)
 - (c) (6S)-5-메틸테트라히드로폴산, 글루코사민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e salt)
11. 비타민 B12 (VITAMIN B12)
- (a) 시아노코발라민 (cyanocobalamin)
 - (b) 히드록소코발라민 (hydroxocobalamin)
 - (c) 5'-데옥시아데노실코발라민 (5'-deoxyadenosylcobalamin)
 - (d) 메틸코발아민 (methylcobalamin)
12. 비오틴 (BIOTIN)
- (a) D-비오틴 (D-biotin)
13. 비타민 C (VITAMIN C)
- (a) L-아스코르브산 (L-ascorbic acid)
 - (b) L-아스코르브산소듐 (sodium-L-ascorbate)
 - (c) L-아스코르브산칼슘 (calcium-L-ascorbate) (7)
 - (d) L-아스코르브산포타슘 (potassium-L-ascorbate)
 - (e) L-아스코빌 6-팔미테이트 (L-ascorbyl 6-palmitate)
 - (f) L-아스코르브산마그네슘 (magnesium L-ascorbate)
 - (g) L-아스코르브산아연 (zinc L-ascorbate)

B. 미네랄

- 아세트산칼슘 (calcium acetate)
- L-아스코르브산칼슘 (calcium-L-ascorbate)
- 비스글리신산칼슘 (calcium bisglycinate)
-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 구연산말산칼슘 (calcium citrate malate)
- 구연산칼슘염 (calcium salts of citric acid)
- 글루콘산칼슘 (calcium gluconate)
- 글리셀로인산칼슘 (calcium glycerophosphate)
-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 피루브산칼슘 (calcium pyruvate)
- 오르토인산칼슘염 (calc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 숙신산칼슘 (calcium succinate)
-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 L-라이신산칼슘 (calcium L-lysinate)
- 말산칼슘 (calcium malate)
- 산화칼슘 (calcium oxide)
- L-피돌산칼슘 (calcium L-pidolate)
- L-트레온산칼슘 (calcium L-threonate)
-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 포스포릴올리고사카라이드칼슘 (calcium phosphoryl oligosaccharides)
- 아세트산 마그네슘 (magnesium acetate)
- L-아스코르브산마그네슘 (magnesium L-ascorbate)
- 비스글리신산마그네슘 (magnesium bisglycinate)
-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 구연산마그네슘염 (magnesium salts of citric acid)
- 글루콘산마그네슘 (magnesium gluconate)
- 글리셀로인산마그네슘 (magnesium glycerophosphate)
- 오르토인산마그네슘염 (magnes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 젖산마그네슘 (magnesium lactate)
- L-라이신산마그네슘 (magnesium L-lysinate)
- 수산화마그네슘 (magnesium hydroxide)

말산마그네슘 (magnesium malate)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L-피돌산마그네슘 (magnesium L-pidolate)
구연산포타슘마그네슘 (magnesium potassium citrate)
피루브산마그네슘 (magnesium pyruvate)
숙신산마그네슘 (magnesium succinate)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phate)
타우린산마그네슘 (magnesium taurate)
아세틸타우린산마그네슘 (magnesium acetyl taurate)
탄산철 (ferrous carbonate)
구연산철 (ferrous citrate)
암모늄구연산철 (ferric ammonium citrate)
글루콘산철 (ferrous gluconate)
푸마르산철 (ferrous fumarate)
소듐이인산철 (ferric sodium diphosphate)
젖산철 (ferrous lactate)
황산철 (ferrous sulphate)
이인산철 (ferric diphosphate) (피로인산철, ferric pyrophosphate)
당산철 (ferric saccharate)
절대철 (elemental iron) (카르보닐 + 전해 + 수소탈락)
비스글리신산철 (ferrous bisglycinate)
L-피돌산철 (ferrous L-pidolate)
인산철 (ferrous phosphate)
암모늄인산철 (ferrous ammonium phosphate)
소듐EDTA철 (ferric sodium EDTA)
타우린산제II철 (iron (II) taurate)
탄산제II구리 (cupric carbonate)
구연산제II구리 (cupric citrate)
글루콘산제II구리 (cupric gluconate)
황산제II구리 (cupric sulphate)
L-아스파르트산구리 (copper L-aspartate)
비스글리신산구리 (copper bisglycinate)
라이신-구리복합물 (copper lysine complex)
산화제II구리 (copper (II) oxide)

아이오딘화소듐 (sodium iodide)
아이오딘산소듐 (sodium iodate)
아이오딘화포타슘 (potassium iodide)
아이오딘산포타슘 (potassium iodate)
아세트산아연 (zinc acetate)
L-아스코르브산아연 (zinc L-ascorbate)
L-아스파르트산아연 (zinc L-aspartate)
비스글리신산아연 (zinc bisglycinate)
염화아연 (zinc chloride)
구연산아연 (zinc citrate)
글루콘산아연 (zinc gluconate)
젖산아연 (zinc lactate)
L-라이신산아연 (zinc L-lysinate)
말산아연 (zinc malate)
모노-L-메티오닌황산아연 (zinc mono-L-methionine sulphate)
산화아연 (zinc oxide)
탄산아연 (zinc carbonate)
L-피돌산아연 (zinc L-pidolate)
피콜린산아연 (zinc picolinate)
황산아연 (zinc sulphate)
아스코르브산망가니즈 (manganese ascorbate)
L-아스파르트산망가니즈 (manganese L-aspartate)
비스글리신산망가니즈 (manganese bisglycinate)
탄산망가니즈 (manganese carbonate)
염화망가니즈 (manganese chloride)
구연산망가니즈 (manganese citrate)
글루콘산망가니즈 (manganese gluconate)
글리셀로인산망가니즈 (manganese glycerophosphate)
피돌산망가니즈 (manganese pidolate)
황산망가니즈 (manganese sulphate)
중탄산소듐 (sodium bicarbonate)
탄산소듐 (sodium carbonate)
염화소듐 (sodium chloride)
구연산소듐 (sodium citrate)

글루콘산소듐 (sodium gluconate)
젖산소듐 (sodium lactate)
수산화소듐 (sodium hydroxide)
오르토인산소듐염 (sod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황산소듐 (sodium sulphate)
황산포타슘 (potassium sulphate)
중탄산포타슘 (potassium bicarbonate)
탄산포타슘 (potassium carbonate)
염화포타슘 (potassium chloride)
구연산포타슘 (potassium citrate)
글루콘산포타슘 (potassium gluconate)
글리셀로인산포타슘 (potassium glycerophosphate)
젖산포타슘 (potassium lactate)
수산화포타슘 (potassium hydroxide)
L-피돌산포타슘 (potassium L-pidolate)
말산포타슘 (potassium malate)
오르토인산포타슘염 (potass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L-셀레노메티오닌 (L-selenomethionine)
셀레늄강화이스트 (selenium enriched yeast) (8)
셀레노우스산 (selenious acid)
셀렌산소듐 (sodium selenate)
수산화아셀렌산소듐 (sodium hydrogen selenite)
아셀렌산소듐 (sodium selenite)
염화크로뮴III (chromium (III) chloride)
크로뮴강화이스트 (chromium enriched yeast) (9)
젖산3수화물크로뮴III (chromium (III) lactate trihydrate)
질산크로뮴 (chromium nitrate)
피콜린산크로뮴 (chromium picolinate)
황산크로뮴III (chromium (III) sulphate)
몰리브데넘산암모늄 (ammonium molybdate, molybdenum (VI))
몰리브데넘산포타슘 (potassium molybdate, molybdenum (VI))
몰리브데넘산소듐 (sodium molybdate, molybdenum (VI))
플루오르화칼슘 (calcium fluoride)
플루오르화포타슘 (potassium fluoride)

플루오르화소듐 (sodium fluoride)
일플루오로인산소듐 (sodium monofluorophosphate)
붕산 (boric acid)
붕산소듐 (sodium borate)
콜린안정화오르토규산 (choline-stabilised orthosilicic acid)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규산 (silicic acid) ⁽¹⁰⁾
유기규소 (organic silicon) (모노메틸실란트리올, monomethylsilanetriol)

(1) 관보 L-시리즈 311, 2001년 11월 28일, p. 67.

(2) 관보 L-시리즈 31, 2002년 2월 1일, p. 1.

(3) 엽산(Folic acid)은 일일권장허용량, 에너지변환계수 및 영양표시목적의 정의와 관련하여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이사회지침 제90/496/EEC호를 개정하는 2008년 10월 28일자 집행위원회 지침 제2008/100/EC호에 대한 부속서 I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형태의 엽산을 지칭한다.

(4) alpha-tocopherol < 20 %, beta-tocopherol < 10 %, gamma-tocopherol 50-70 % 및 delta-tocopherol 10- 30 %

(5) 각 tocopherol 및 tocotrienol의 일반적인 함량:

- 115 mg/g alpha-tocopherol (101 mg/g 최저),

- 5 mg/g beta-tocopherol (< 1 mg/g 최저),

- 45 mg/g gamma-tocopherol (25 mg/g 최저),

- 12 mg/g delta-tocopherol (3 mg/g 최저),

- 67 mg/g alpha-tocotrienol (30 mg/g 최저),

- < 1 mg/g beta-tocotrienol (< 1 mg/g 최저),

- 82 mg/g gamma-tocotrienol (45 mg/g 최저),

- 5 mg/g delta-tocotrienol (< 1 mg/g 최저),

(6) Menaquinone은 주로 menaquinone-7으로 형성되고 일부는 menaquinone-6로 형성된다.

(7) 최고 threonate 2 % 함유.

(8) selenium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시판되는 것과 같은 건식 상태에서 2.5 mg Se/g 이상을 함유하지 않는 sodium selenite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배양 된 Selenium-enriched yeast. Yeast에 주로 존재하는 유기 selenium종은 selenomethionine이다(제품 중 추출된 총 selenium의 약 60~85% 사이). Selenocysteine 등 여타의 유기 selenium화합물 성분은 추출된 총 selenium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무기 selenium의 함량은 일반적으로 추출된 총 selenium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Chromium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시판되는 것과 같은 건식 상태에서 230-300 mg chromium/kg을 함유한 chromium(III) chloride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배양 된 Chromium-enriched yeast. Chromium(VI)의 함량은 총 chromium의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겔(gel) 형태.